

시 민

주무관	생산관리과장	생산부장	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	상수도사업본부장
이규현	노영석	박용철	정득모	09/30 남원준
협 조	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 주무관			최현실 오순환 이춘희 김동기 허현수 정윤홍

문서번호	생산관리과-10796
결재일자	2014.9.3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

**"뚝도아리수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관련"
서울숲 - 뚝도정수센터 간 부지교환 사업 추진**

2014. 9

**상수도사업본부
(생산부)**

사건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민 참여 고려 사항	● 시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`
	● 이해 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`
	● 전문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`
	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`
법령 및 기타 고려 사항	● 법령 규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`
	● 기 타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
	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`
	●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`
	● 기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`
관계 기관 및 단체 협의	● 관계 기관 : 유 ■` (동부녹지사업소, 푸른도시국 서울숲관리사무소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관련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`

"뚝도아리수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관련" 서울숲 - 뚝도정수센터 간 부지교환 사업추진

뚝도정수센터의 농축조 시설용량 부족으로 배출수 수질기준 준수 어려움 및 '16년부터 시설용량이 20만톤/일 증설됨에 따라 농축조 시설의 증설 및 개량이 시급하여 서울숲과 정수센터 부지를 교환하는 사업 진행 사항임.

※농축조: 정수처리 과정에서 침전지에서 침전된 오염물(슬러지)을 체류시켜 수질확보하는 시설

■ 추진배경

- '시설용량 50만톤 → 70만톤/일, 20만톤 증설('15년 준공예정)시 기존 농축조 용량 부족으로 증설 필요

- 현 시설용량 6,883m³, 일평균 배출수발생량 13,520m³로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임

구 분	규 격(m)	수 량	시설용량 (m ³)	설치 연도	배출수 발생량(m ³)		
					계	정수장	청계천
농축조	Φ31.0×H4.0	2지	6,883	1992	13,520	12,091	1,429

- 현재 진행중인 고도정수시설 공사 및 재건설 준공('15년말)시 까지 재건설 필요

- 지속적인 법적 수질기준 강화로 배출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움

구 분	'92년건설당시	2007년 이전	2008~2010년	2011년 이후
SS기준(ppm)	80	30	20	10
관계 법령	수질및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			하수도법

- 건설당시에는 농축조 용량이 부족하지않았으나, 수질기준이 점차 강화됨에따라 농축조용량 부족으로 걱정 체류시간확보 곤란

- 22년이 경과된 농축조 시설의 노후로 개량 필요

- 2차 농축조 구조물의 기울어짐 등 침하가 진행되고있으며, 배관시설(강관)의 노후가 심하여 개량이 필요함

- '2030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- 농축조 증설 및 기존시설 개량 제시

- 수년간 농축조 증설을 검토하였으나, 부지확보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음

■ 그동안 추진사항 (중설 부지확보)

● 재산관리 부서 협의 : '14. 4 ~ '14. 7

- 부서 :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, 동부녹지사업소, 서울숲관리사업소
- 협의결과 : 공원법에 근거하는 대체 부지교환을 통하여 상호교환 추진 가능
 - ▶ 대상부지 : 서울숲 이벤트마당(2,500m²), 뚝도현장 사무실외1개소 (2,500m²)



<대체부지 교환 : ①번의 서울숲 부지와 ②,③번 뚝도정수장부지 상호교환>

●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협의 : '14. 7. 15

-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미대상 :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미대상
- 사유 : 교환 대상부지가 시설 전체면적의 5% 범위 이내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함
 - ▶ 서울숲 (202,187.54m²), 뚝도정수센터(131,041.33m²), 대상면적(2,500m²)
-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계획국에 변경 요청으로 자체 변경 가능

●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수행 용역 발주 및 계약 : '14. 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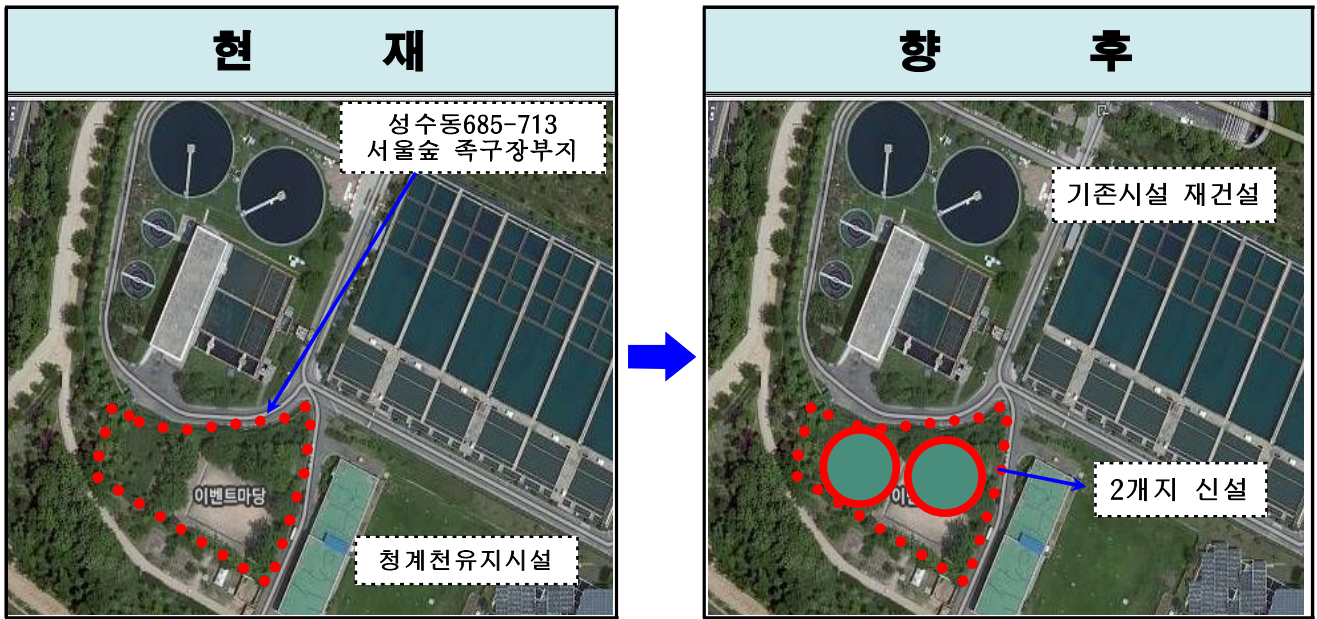
- 용역명 : 뚝도정수센터와 서울숲간 부지교환 관련 서울숲기본계획(변경)용역
- 계약자 : (주)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안계동
- 계약기간 : 2014. 8. 28 ~ 2014. 11. 26
- 과업내용 : 상호 부지교환에 따른 서울숲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
 - ▶ 부지교환에 따른 측량 등 면적 결정 및 기본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
 - ▶ 10월~11월 심의예정인 도시공원 심의 자료작성 및 심의 성공적 수행

■ 개량 및 증설계획

●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농축조 증설 및 기존시설 개량

- 서울숲 이벤트마당 부지를 확보하여 농축조 2개지 재 건설 및 기존 농축조 개량 추진
- 규모 : 당초 6,883m³ → 변경 17,309m³ (D35m × H4.5m × 4지)
- 소요예산 : 7,200백만원 (실시설계 용역비 3억포함) 기존 2개지 개량포함

〈농축조 개량 및 증설 계획도〉



- 서울숲 편입부지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상수도본부에서 공원 조성

■ 공유재산 교환 계획

● 재산현황 : 교환대상 3필지 공시지가 동일(58만원/m², 1,450백만원)

- 서울숲 : 성동구 성수동 1가 685-713, 면적 2,500m²,
- 뚝도정수 : 성동구 성수동 1가 685-713(1,451.9m²), 642-1(1048.1m²)

● 본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하여 재산 상호교환 추진

- 추진부서 : 상수도사업본부
- 상정예정 일시 : 2014. 12월 11일 (예정), 심의부서(본청 자산관리과)
- 추진내용
 - ▶ 2개부서 2,500m²의 동일한 면적의 부지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, 향후 세부 측량을 통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면적은 유상으로 교환

■ 향후 추진계획

- **본청 투자심사 추진 중 : '14. 8월 ~ 9월**
 - 개요 : 사업비 72억원, 공사기간 15.1~ 16. 8월
 - ※ 최종투자심사 심의 : 2014. 9.30 본청재정담당관
- **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: '14. 12.11(예정)**
 - 추진부서 : 상수도사업본부
 - 추진내용 : 부서간 재산 교환을 위한 방법 및 절차 심의
- **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: '14. 10 ~ '14.11월**
 -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최종 용역 결과를 관리부서인 서울숲 관리사무소에서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개최하는 '10월~11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
- **도시계획 변경 : '14. 11 ~ '14.12월 (본청도시계획국)**
 - 대상부지 도시계획 지목변경 : 공원용지 ↔ 수도용지 변경
 - 관련법상 대상부지가 5%미만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계획국내에서 자체변경
- **실시설계 용역 및 발주 시공 : '15. 1 ~16.7. 끝.**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제16조(공원조성계획의 입안)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(이하 "공원조성계획"이라 한다)을 입안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>

제16조의2(공원조성계획의 결정)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·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·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같은 한다. <개정 2011.4.14>

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(公報)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5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말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(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.

4.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, 도·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,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,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,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)을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03.9.29, 2004.1.20, 2005.1.15, 2005.9.8, 2008.2.29, 2008.7.28, 2008.9.25, 2009.7.7, 2010.10.1, 2012.4.10, 2013.3.23>

1. 단위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
가. 도로: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

나. 공원 및 녹지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)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

2) 최초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, 최초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. 다만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(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인 경우는 제외한다.